



수험소식 및 수험자료

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

1.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

시험명	직류	선발예정인원	합계
제36회 입법고시	일반행정	6명	15명
	법제	3명	
	재경	6명	

※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와 그 소속기관입니다.

2. 시험과목

직류	제1차시험(선택형)	제2차시험(논문형)
일반행정	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	필수(4) : 행정학, 행정법, 경제학, 정치학 선택(1) : 정책학, 지방행정론(도시행정 포함)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, 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
법제	영어 (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)	필수(4) : 헌법, 민법, 형법, 행정법 선택(1) : 상법,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, 세법
재경	한국사 (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)	필수(4) : 경제학, 재정학, 행정법, 행정학 선택(1) : 회계학, 통계학, 국제경제학, 상법, 세법

※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.

※ 제2차시험의 법률과목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배부합니다.

3. 시험방법

○ 제1차시험 : 선택형 필기시험

- PSAT의 경우 각 과목 5지선다형 40문항/ 과목당 90분
- 헌법과목은 25문항(5지선다형 / 25분)으로 60점 미만일 경우 다른 과목 점수에 상관없이 불합격이며,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.

○ 제2차시험 : 논문형 필기시험

○ 제3차시험 : 면접시험

- ※ 이전 회의 입법고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 입법고시의 동일한 직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, 자세한 사항은 '11. 기타'에서 안내합니다.

4. 응시자격

구 분	내 용
결 격	○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○ 「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」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(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의 “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안내” 참조)
연 령	○ 20세 이상인 자(2000. 12. 31. 이전 출생자) ○ 「국가공무원법」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는 자
학력·경력	○ 제한 없음.

※ 연령기준 외의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제36회 입법고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제3차시험 시행예정일) 기준

5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구 분	일 시	비 고
공 고	1. 31.(금)	국회채용시스템
원서접수	2. 4.(화) 09:30 ~ 2. 11.(화) 17:00 *2. 7.(금) 21:00 ~ 2. 8.(토) 24:00 제외	국회채용시스템 (관련서류 우편제출)

제1차시험	시험장소 공고	3. 6.(금)	국회채용시스템
	시험일자	3. 14.(토)	
	합격자 발표	4. 10.(금)	국회채용시스템
제2차시험	시험장소 공고	4. 10.(금)	국회채용시스템
	시험일자	5. 18.(월) ~ 5. 20.(수)	
	합격자 발표	7. 15.(수)	국회채용시스템
제3차시험	시험장소 공고	7. 15.(수)	국회채용시스템
	시험일자	7. 28.(화) ~ 7. 29.(수)	
최종합격자 발표		7. 31.(금)	국회채용시스템

※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상기 일정 외에 인·적성 검사 일정이 별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
※ 응시원서 접수취소 마감일은 2. 14.(금) 21:00입니다.

6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

구 분	TOEFL		TOEIC	TEPS		G-TELP	FLEX
	PBT	IBT		18.5.12. 전 시험	18.5.12. 이후 시험		
일반 응시자 기준점수	530	71	700	625	340	65 (Level 2)	625
청각장애 응시자* 기준점수	352	35	350	375	204	43 (Level 2)	375

* 청각장애의 정도가 '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 이거나, '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응시자

※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(말하기 포함)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, 원서접수·취소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(3.16. ~ 3.18.)에만 가능합니다.

나.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

-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.

7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가. 기준점수(등급)

시험의 종류		기준점수
한국사능력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

※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, 원서접수·취소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(3.16. ~ 3.18.)에만 가능합니다.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

-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(등급)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